

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. 2. 21 선고 2017가단11317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등
청구의 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변론 종결2017. 12. 6.

판결 선고2018. 2. 21.

주 문

1.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1993. 2. 12. 접수
제2142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2. 피고 B, E, C, D에 대한 청구 : 자백간주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).
3. 피고 F에 대한 청구 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상완

별지